



기계식 주차설비 상부에서 추락



주상복합건물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입주자 차량을 출고하던 중 주차설비 오작동으로 입주자가 탑승한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자 피해자가 지하 2층 주차설비 상단에서 차량을 찾다가 발을 헛디뎠다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설비내부의 조도 미흡
 - 주차설비 내부에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명시설 미확보
- 주차설비 가동 중 위험지역 출입
 - 주차설비 출입 시 주전원 차단 및 전원스위치에 다른 근로자의 오작작을 방지하기 위한 '작업 중' 표지 부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장소 작업

TIP

안전작업

1 작업장소에 충분한 조도 확보

- 주차설비 내부와 근로자 통행통로는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거나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·사용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

2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

- 주차설비 점검 시에는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차단

3 개인보호구 착용

-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(안전모 등) 착용



충분한 조도 확보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작업등의 운전정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(통로의 조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




기계식 주차설비 상부에서 추락

설비 내부 통로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세요!

